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
----------	----

2022년 9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8월 29일, 정준호 의원 외 25명
-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2일
- 다. 상정일자: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준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소규모 배출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
- 소규모 배출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안 제21조).
-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ub>s</sub>)<sup>1)</sup>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배출하지만, 그 수가 매우 많아 관리가 필요한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하고,

이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외한 세탁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시설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한 것이고,

안 제20조제2호와 제3호, 안 제21조는 소규모 배출원 규제대상에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및 직화구이 음식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이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VOC<sub>s</sub>는 방향족 또는 할로젠족 탄화수소로써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체 유해성이 높은 오존의 전구 물질<sup>2)</sup>로 알려짐에 따라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배출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음.

---

1)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온과 상압에서 대기 중에 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 가운데 석유 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을 이르는 말

2) 전구물질: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li> <li>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li> <li>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li> </ol>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b></p> <p>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li> <li>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li> <li>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li> </ol> <p>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2019년 서울시 VOCs 배출량은 53,177톤 수준으로 이 중 67%<sup>3)</sup>가 소규모 배출원<sup>4)</sup>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관내에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대표적 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이 총 2만 개소 이상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이들의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

<2019년 서울시 관내 소규모 배출원 수(개소)>

소계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20,394	6,276	5,452	8,666

※ 자료: '19년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 자료 참조

※ 도장시설도 677개소가 존재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

- 따라서 안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연소 유발 배출원에 대한 규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조례에 근거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는 향후 VOCs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0년 5월 동 조례에 세탁소 VOCs 회수시설설치 명령 및 재정 지원<sup>5)</sup>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음에도, 개정 이후 2022년 9월까지 세탁소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단순히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 2019년 휘발성유기화합물 소분류별 주요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세탁업 3,858톤/년, 인쇄업 6,277톤/년,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 25,685톤/년

4) 총 13개 배출원 중 '세탁'과 '인쇄업' 및 '가정/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을 소규모 배출원으로 가정

5)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이들에 대한 연차별 지원방안 및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조항들은 번역 투 표현, 불필요한 단어 및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수정하여 좀 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정지원신청 등)”을 “(재정지원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을 “친환경차량과장·기후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가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사가장이 추천하는 해당 협회의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사가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 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이상의”를 “2 이상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보급 되지”를 “인증·보급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고당시보다”를 “출고 당시보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의2제3호 중 “차령과”를 “차령을 고려하거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을 “(소규모 배출원 규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u>”이란 「<u>대기환경보전법</u>」 제2조제11호에 따른 <u>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u> 사항은 「<u>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이하 “<u>특별법</u>”이라 한다)이나 「<u>대기환경보전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 ----- ----- ----- ----- <u>않은</u> ----- ----- -----.</p>
<p>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u>자</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및 용자(이하 “<u>재정지원</u>”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재정지원대상) ----- ----- <u>자에게</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u>재정지원신청 등</u>) (생략)</p>	<p>제9조(<u>재정지원신청</u>) (현행과 같음)</p>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협회의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은행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수탁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출한다.

② (생략)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

제10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친환경차량과장·기후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  
-----사람은-----.

1. ----- 의원 ---
2. ----- 임원 ---
3. ----- 이사 ---
4. ----- 임원 ---
5. -----  
----- 사람 ---

④ ----- 2 이상의 -----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  
-----에게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 ① (생략)
-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차령을 고려하거나 -----  
-----  
-----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에게  
-----.

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

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

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 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명령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